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5-465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6 월 5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정보화관련 상위 법률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으로 통•폐합되고, 조직개편으로 정보화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를 이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조례」로 제명 변경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조례」의 근간이 되는 「국가정보화기본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삭제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그 목적에 정보통신망 관련 사항이 삭제됨)

다.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정보화책임관"에게 정보화의 정책수립 및 총괄운영 업무를 부여함에 따라, "지역정보화본부"를 폐지하고, "정보화책임관"지정 및 "정보화총괄부서", "정보화부서"에 각각의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정보화 추진체계 정비 (안 제7조, 제8조, 제9조)

라.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폐지에 따라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폐지

마.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 조항을 폐지하고, 민관기관과의 협력 및 정보화교류 조항을 추가하여, 보다 현실적인 민간투자의 적극유치 및 민간 기관 및 사업자 지원의 근거를 마련 (안 제19조, 제20조)

바. 정보화자료 관리 부분에서, 정보화사업 초기의 원시자료 입력 등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정보공개 등을 통한 정보화자료 제공 등 현 제도에 맞도록 관련사항 수정 (안 제36조, 제37조, 제3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15년 6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홍보마케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청 홍보마케팅과(전화번호 02-2627-1117, FAX 02-2627-2299)